

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밸류웨이연금저축증권자투자신탁(주식)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2. 23.

□ **정정 사유**

- (1)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
- (2) 자본시장법 및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<신설>	<u>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2014.8.31	<u>2015.1.31</u>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u>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추가	<u>트러스톤 밸류웨이 퇴직연금 펀드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	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
<p>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 연금소득 제외)</p> <p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: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: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<u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u>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)</p> <p><u>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: 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</u></p>
<p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	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</p>
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</p>	<p>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</p>	<p><u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</p>	<p>회계감사 관련 내용 기재</p>	<p><u>③회계감사</u>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</p>

		<p>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
--	--	--